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11월 7일, 정부 제출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12. 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5. 2. 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3. 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부 제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구생산

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3항 및 제4항 삭제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선영)

현행 「수산업법」 제71조는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창업·영업과정에서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절차를 개선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적은 분야는 행정의 수리행위 없이 신고만으로 바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법령 정비의 취지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현재 영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규정에서 수리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해당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하려는 것임.

정부는 소상공인 등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 방안에서 특정 영업의 운영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신고로서 법령에 인력·시설·장비 등 신고를 위한 실체적 요건 규정이 없는 경우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바,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는 어구의 생산과 판매 현황 등 관련 영업의 운영 실태를 확인·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고, 법률에도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실체적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부의 정비 요건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에서도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 정비를 통한 실제적인 기간상의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경태 위원)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